

200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의안	번호
	198

제출년월일 : 2005. 11. 24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 이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2. 주요 골자

200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은
취득이 총 2건으로 11,635㎡ 534,445천 원인 바 그 상세내역은

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취득은

- 봉평면 효석생가 복원 부지 1필지 11,635㎡
토지 매입이 1건 3필지 11,635㎡이고
- 진부면 목공예 단지 신축 660㎡
건물 신축이 1동 660㎡ 임

3. 관계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

2005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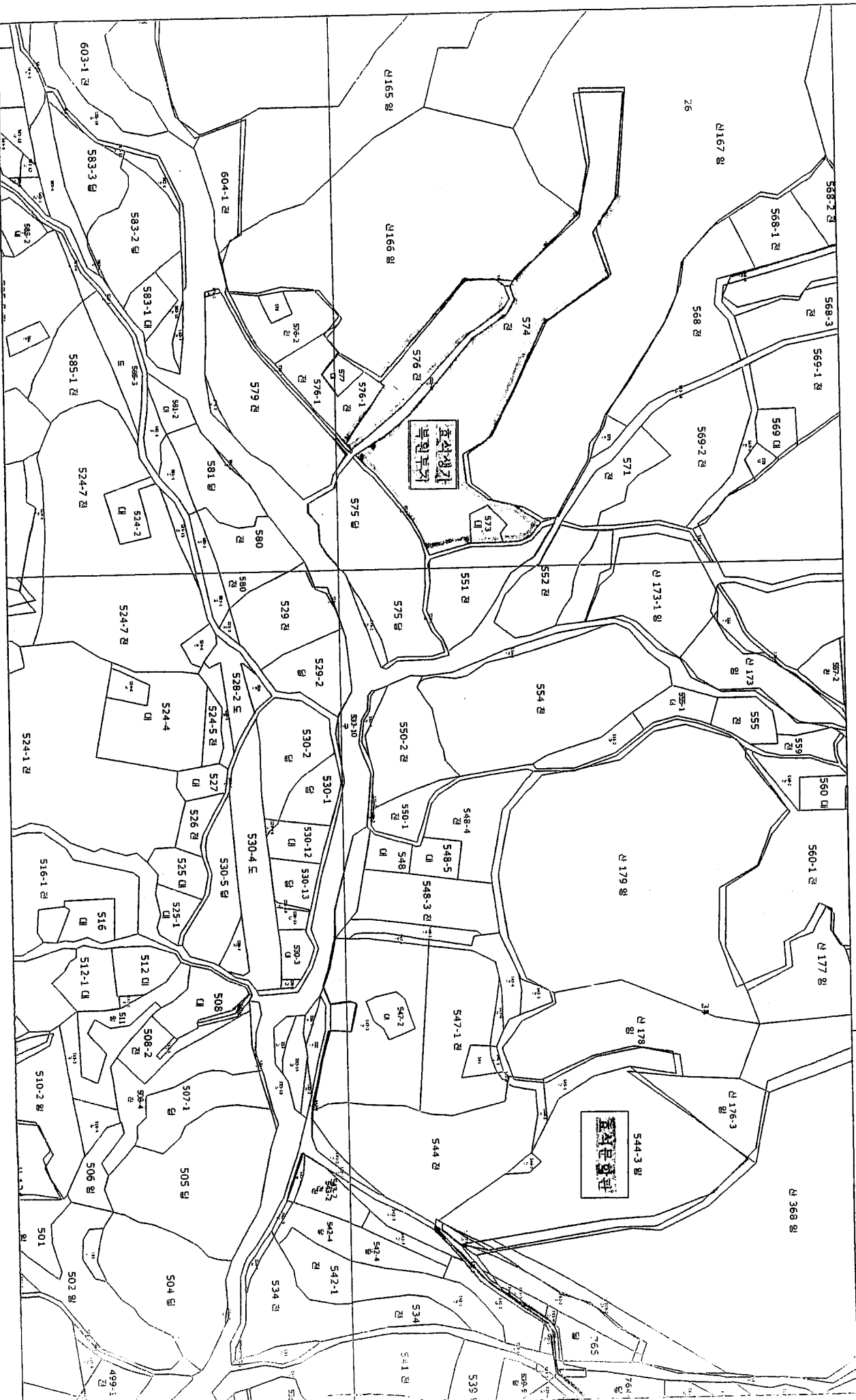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 토지매입 합계			11,635	216,665			
1	대	창동리573	337	3,133	하반기	효석생가복원부지	전상국
	전	창동리574	9,200	173,880	하반기		전상국
	전	창동리576	2,098	39,652	하반기		전상국
○ 건축물 신·증축 합계			660	318,780			
1	목조	동산리17-5	660	318,780	하반기	목공예단지신축	
		이하	빈칸				

광대 지도면

축척

1:2837



토지 대장

고유번호	4276034021-10573-0000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지번	573	축척	1:1200

도면번호	26	발급번호	20051118-0591-0001
장번호	1-1	처리시각	15시 33분 03초
비고		작성자	김택용

지목	면적 (㎡)	사유	토지표시		소유자				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인	전상구	
(08) 대	*337*	--- 이하 여백 ---	1984년5월2일	(03)소유권이전	창동리 573	전상구	--- 이하 여백 ---	511012-1*****	
등 급 연 수 월 일	1981년8월26일 수정	1984년7월1일 수정	1987년8월1일 수정	1989년1월1일 수정	1994년1월1일 수정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41	90	102	111	112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02년1월1일	2003년1월1일	2004년1월1일	2005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원/㎡)	8,620	11,400	17,600	18,2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강원도 평창군수

고유번호	4276034021-10574-0000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지 번	574	축 척	1:12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26	발급번호	20051118-0591-0002
강 번호	1-1	처리시각	15시 33분 05초
비 고		작성 자	김백용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 적 (㎡)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영 칭	등록번호					
(01) 전	*9,200*	--- 이하 여백 ---		1984년5월2일	창동리 573	511012-1*****					
		--- 이하 여백 ---		(03)소유권이전	전장목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 급 연	수 월 일	정 일	1981년8월26일	1984년7월1일	1989년1월1일	1991년1월1일	1992년1월1일	1993년1월1일	1994년1월1일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35	71	80	86	90	94	99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02년1월1일	2003년1월1일	2004년1월1일	2005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원/㎡)	6,440	7,200	14,400	18,9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강원도 평창군수

토지 대장

고유번호	4276034021-10576-0000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지 번	576	축척	1:1200

도면번호	26	발급번호	20051118-0591-0603
장 번호	1-1	처리시각	15시 33분 06초
비 고		작성자	김백용

토 지 표 시

지 목	면 적 (㎡)	사 유	변 동 일 자		성 명 또는 명 칭	주 소	등록번호	
			변 동 원 인	일 자				
(01) 전	*2,098*	(20)1999년11월3일 분할되어 본연에 -1, -2을 부함	---	이하 여백 ---	1984년5월2일	창동리 573	511012-1*****	
					(03)소유권이전	전상국		
등	급 수 정 일	1981년3월26일	1984년7월1일	1989년1월1일	1991년1월1일	1992년1월1일	1993년1월1일	1994년1월1일
	연 수 정 일	주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지 등 일	35	71	80	86	90	94	100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02년1월1일	2003년1월1일	2004년1월1일	2005년1월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6,440	7,200	14,400	18,9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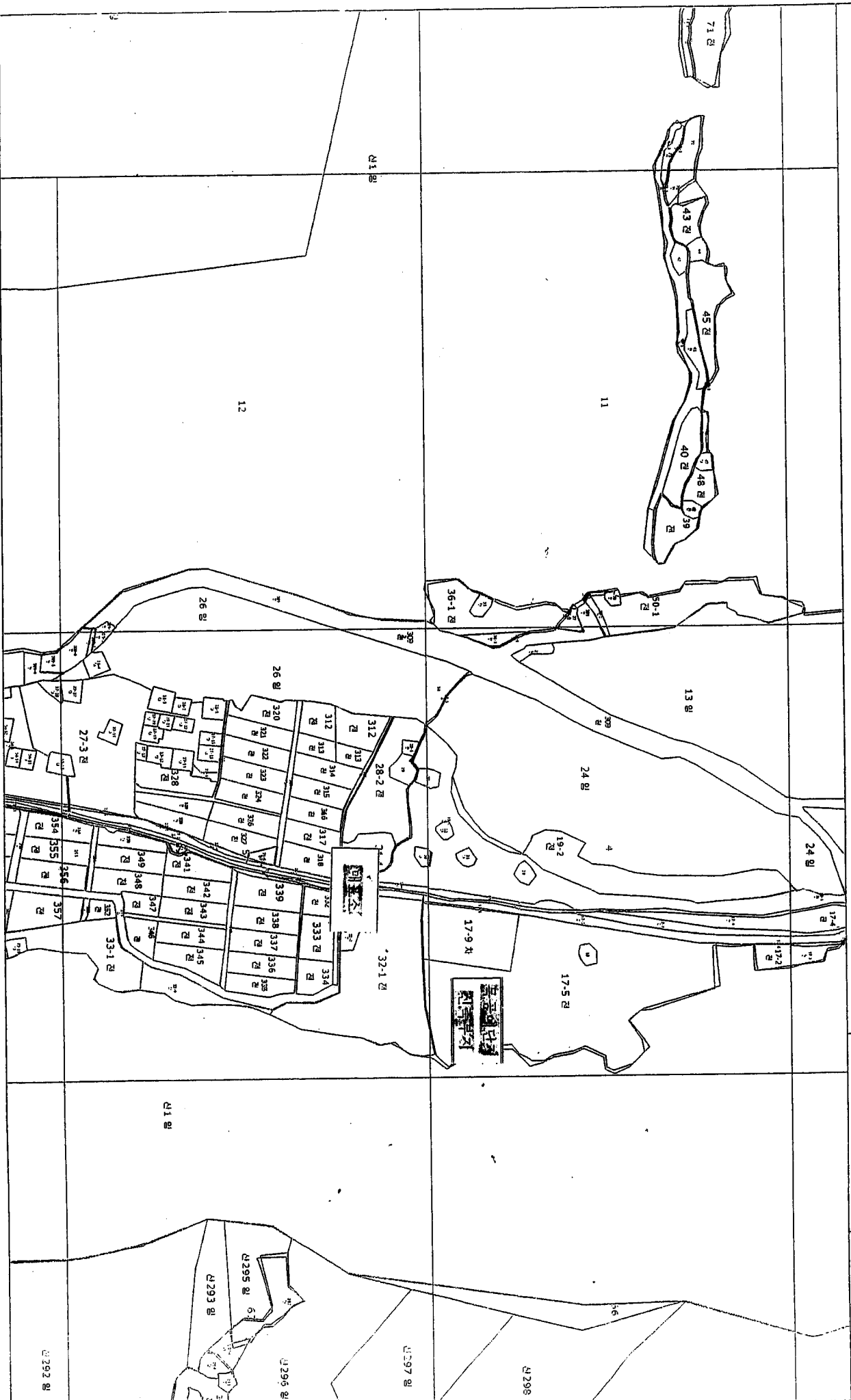
2005년 11월 18일

강원도 평창군수

광대지도면

축척

1:5675



관 계 법 령

지 방 재 정 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설치,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5. 삭제 <2002.11.29>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